

1999년도 남강정수장 확장사업비 부담금 지방채 발행계획안
(의안번호 제517호)

심사보고서

1998. 11. 27.
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11. 21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11. 23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8. 11. 27 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수도법 제52조2(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부담한다.)의 규정에 의하여 남강정수장 확장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에 대하여 1999년도 예산안 승인을 득하기 앞서 19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승인받고자 본 안을 제출함.

3. 주요골자

- 지방채 발행계획
- 1999년 남강정수장 확장사업비 부담액 : 213백만원
 - 용자재원 : 지역개발기금
 - 이 율 : 년리 8%
 - 상환조건 :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
 - 상환재원 : 군비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건은 수도법 제52조2(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부담한다.)의 규정에 의하여 남강정수장 확장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에 대하여 1999년도 예산안 승인을 득하기 앞서 19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

-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촌리 산 20-1번지에 남강계통 광역 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으로 수원확보가 곤란한 서부경남 사천시, 진주시, 통영시, 고성군 일원 지역의 생활용수, 공업용수 등 급증하는 용수수요에 대처코저 함이며, 총 사업비는 299억원임.
- 사업기간은 1996년 10월 ~ 1999년 12월까지 3년간이며, 현 우리군에서 공급받는 수량은 1일 16,500M/T이나 앞으로 삼산, 동해 등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추가 수요량 1일 2,000M/T은 2단계 확장사업 배수지에서 공급받을 계획임.
- 본 확장계획의 사업비 배분은 각 시군별 공급받을 용수량의 비율에 의한 배분으로 우리군 사업비 부담액은 1999년도 213백만원이며, 2000년 이후에는 537백만원으로 상환재원은 군비부담임.
- 금회의 지방채 발행은 열악한 군재정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으나 사업필요성이나 군민의 식수나 생활용수의 해결을 위해서는 필요 불가피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8. 11. 2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